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6,983,461	20,309,504
일반회계	618,341,773	18,550,253
특별회계	58,641,688	1,759,251
공기업특별회계	52,547,542	1,576,42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574,670	1,127,2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72,872	449,186
기타특별회계	6,094,146	182,82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69,853	62,096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35,767	61,073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543,508	46,30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45,018	13,35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33,27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